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 계획



2020. 12.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경기꿈의학교 가치체계도	
▣ 2021 경기꿈의학교 주요 변경 사항	
I. 근거	1
II. 목적	1
III. 방침	1
IV. 공모 개요	3
1. 유형별 공모 개요	3
2. 업무 추진 일정	4
V. 세부추진계획	5
1.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모	5
2.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공모	5
3.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	8
4. 공모 신청	9
VI. 예산운용 및 질 관리	11
1. 예산운용 방침	11
2. 질 관리 방침	11
3. 홍보 계획	12
VII. 행정사항	12
VIII. 기대효과	13
▣ 붙임1.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문(안) 1부	14
▣ 붙임2. 심사관점 및 선정기준	18
▣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26

2021 경기꿈의학교 주요 변경 사항

영역	2020년	2021년	비고
「만꿈」 지원금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300만원 이내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500만원 이하	-지원예산 변화
「찾꿈」 공모 유형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일반공모형 · 특별공모형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도전형(신규형) · 성장형(1년 이상 운영교) · 사회적협동조합형	-공모 유형 다양화
「다꿈」 공모 유형	- 「다함께 꿈의학교」 · 기관형	- 「다함께 꿈의학교」 · 기관형 · 청소년단체형	-청소년수련관(원), 문화의집 등은 모두 기관형으로 포함 -청소년단체형 신설
「찾꿈」 공모 및 지원금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일반공모 · 2천만원 이내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특별공모 · 2천만원 이상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공모 · 도전형: 1천만원 이하 · 성장형: 2천 5백만원 이하 · 사회적협동조합형: 5천만원 이하	-예산 부적정시 탈락
구비 서류 구체화	- 증빙서류 [필수] · 2차 면접 시 인편 제출	- 증빙서류 [필수] · 우편을 통한 접수	-코로나19 대응 관리
	- 2차 면접심사 · 대면심사	- 2차 면접심사 · 대면, 온라인, 전화심사 등 병행 가능	-코로나19 대응 관리
	- 고유번호증 제출	- 고유번호증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형 별도 안내	-사회적협동조합형 제출 서류 추가
질 관리	- 학교별 컨설팅(모니터링) 4회 이상	- 학교별 컨설팅(모니터링) 4회 이상 · 과정평가 지표로 활용	-2022년도 심사 평가지표로 활용
	- 특별공모 컨설팅 1회 추가 실시	- 사회적협동조합형 컨설팅 별도실시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신설
	- 꿈의학교별 학생 만족도평가	- 꿈의학교별 학생 만족도평가 · 과정평가 지표로 활용	-꿈의학교 안정 성장 지원
지자체 공동 운영	-	- 꿈의학교 지자체 공동운영 (시흥시, 오산시 시범운영) ※ 지자체별 별도 공고문 참조	-꿈의학교 지역 특색화 강화

경기꿈의학교 가치체계

□ 슬 로 건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

□ 비 전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

□ 핵심가치



□ 경기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 도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운영원리

01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02

온 마을이 함께 운영한다.

03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04

더불어 배우고 나누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 계획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I 근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9.6.18.)제8조,9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11조
- 「꿈의학교 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시흥시, 오산시)

II 목적

-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해 자아탐색 및 꿈 실현
- 꿈의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 구축

III 방침

- 공모 유형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이하 ‘「만꿈」’),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¹⁾」(이하 ‘「찾꿈」’), 「다함께 꿈의학교²⁾」(이하 ‘「다꿈」’)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별도 공모
- 공모 및 선정은 학생꿈조사³⁾를 통해 선정한 다양한 꿈의학교 주제 영역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당 주제 분야별 1교 이상 선정
- 「찾꿈」 유형 중 사회적협동조합형 유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확장과 꿈의학교 자생성 강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별도 공모

1)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도전형(신규),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이 있으며, 도전형과 성장형은 교육지원청 공모·심사, 사회적협동조합형은 도교육청 공모·심사 실시
2) 「다함께 꿈의학교」는 공모형과 비공모형으로 구분됨 ① 공모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출연(하부)기관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원), 문화의집 등이 운영하는 기관형과 경기도교육청과 별도 협약된 청소년단체의 지역대가 운영하는 청소년단체형이 있음 ② 비공모형은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기관(기업) 및 단체가 예산 전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3) 학생꿈조사 상위 11개 분야(2019년 실시, 격년으로 조사함):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환경), 뮤지컬·연극, 진로 등

- 지자체(시흥시, 오산시) 공동운영은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계획」을 준용하며, 「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에 의거하여 꿈의학교 지역 특색화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역 공고문에 따라 추진
- 예산 지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되 부적정(허위 및 부풀리기)예산 시 우선 탈락하며, 적정한 꿈의학교의 경우 신청예산을 조정 없이 예산 지원함. 단, 1,2차 심사 결과 하위 20% 내외에서 예산 조정 가능
-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한 꿈의학교 운영 내실화로 질 관리
- 국정 감사, 행정사무감사, 언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꿈의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해당되는 꿈의학교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심사에서 탈락

IV 공모 개요

1 유형별 공모 개요

구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도전형 (신규)	성장형	사회적협동 조합형	기관형	청소년 단체형
예산 지원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 5백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백만원	1백만원
응모 자격	·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개인 · 비영리 단체(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기관형)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 출연 기관 등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활동 시설 (청소년단체형) ·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청소년단체 ※(비공모형)은 별도 계획 추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운영 시간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모집 인원	1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4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모집교수	약 000교 내외	약 000교 내외			약 000교 내외	
신청 기간	2020.12.21.(월) ~ 2021.1.22.(금) 17:00까지	2021.1.8.(금) ~ 2021.1.21.(목) 17:00까지				
운영 기간	2021년 5월 ~ 2021년 12월					
공모 지역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 *오산시, 시흥시는 별도 공고문 참조					
비고	* 「찾꿈」의 도전형(신규)과 성장형은 교육지원청 공모, 사회적협동조합형은 도교육청 별도 공모임 * 「찾꿈」 사회적협동조합형은 성장형(도전형)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각각의 심사에 모두 참여해야 함(사회적협동조합형 선정 시 성장형(도전형) 선정이 자동취소) * 오산시, 시흥시는 「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에 따라, 지역별 별도 공고문 참조					

2 업무 추진 일정

순	일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	2021.1.6.(수)	·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 공고	
2	2021.1.6.(수)~1.10.(일)	·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설명회(영상 탑재)	
3	(만꿈 공모) 2020.12.21.(월)~2021.1.22.(금) (찾꿈, 다꿈 공모) 2021.1.8.(금)~2021.1.21.(목)	· 공모 서류 접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village.goe.go.kr) 통한 온라인접수	
4	2021.2.1.(월)~2.26.(금)	· 사회적협동조합형 공모심사 - 1차 서류심사(2.1.~2.3.) - 2차 면접심사(2.4.~2.5.) - 3차 현장심사(2.8.~2.18.)	· 지역별 공모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현장심사
5	2021.3.24.(수)~3.31.(수)	· 선정결과 발표(예정)	
6	2021.4.1.(목)~4.15.(목)		· 지역별 운영자 (꿈지기) 모임 - 회계처리 방법 연수 (필수 이수) - 약정서 체결 - 수정계획서 제출
7	2021.4월 중순 이후	· 사업비 교부 예정	
8	2021.5.3.(월) 14:00~	· 학생 모집 시작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village.goe.go.kr) 통한 온라인 접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모

□ 정의 및 목적

- 정의: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스스로 꿈의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목적: 학생 스스로 꿈의학교를 기획, 운영하여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함

□ 방침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생이 기획,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성, 진로탐색, 도전정신 등을 기준으로 공모 선정함

□ 공모방법

- 신청대상: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 운영시간: 30시간 이상 운영
- 모집인원: 10명 이상 모집 운영(동일교 50% 초과불가)
- 예산지원: 5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및 심사관점: [붙임2] 심사관점 및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참조
- 운영방법: 꿈짱 1명 이상(공동 꿈짱 가능), 꿈지기(어른) 1명으로 꿈의학교 프로그램 운영

2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공모

□ 정의 및 목적

- 정의: 경기도 내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학생의 꿈실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목적: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꿈의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함

□ 방침

- 「찾꿈」은 도전형(신규),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이 있으며, 각각 별도로 공모, 선정함
- 「찾꿈」에 신청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법인)는 1교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유형⁴⁾의 꿈의학교에 중복신청 불가함. 단, 사회적협동조합형은 성장형(도전형)과 중복하여 신청가능하며, 각 유형의 심사에 각각 참여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형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모 가능하며 도교육청에서 별도 심사함

□ 유형별 공모 방법

○ 도전형(신규)

- 신청대상: 꿈의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법인)
- 운영시간: 30시간 이상 운영
- 모집인원: 20명 이상 모집 운영(동일교 50% 초과불가)
- 예산지원: 1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및 심사관점: [붙임2]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참조
- 운영방법: 운영대표 1명, 실무자 2명으로 꿈의학교 프로그램 운영

○ 성장형

- 신청대상: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운영자(실무자 제외) 중 개인,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 운영시간: 50시간 이상 운영
- 모집인원: 20명 이상 모집 운영(동일교 50% 초과불가)
- 예산지원: 2천 5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및 심사관점: [붙임2]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참조
- 운영방법: 운영대표 1명, 실무자 2명으로 꿈의학교 프로그램 운영

4) 꿈의학교 유형: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 사회적협동조합형

- 신청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조건1]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조건2] 주 사업유형이 ‘지역사업형’ 이며,
정관의 목적에 ‘마을교육’ 또는 ‘학생교육’ 관련 내용 포함
 - 방과 후 교육 위탁 사업자 제외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일 경우 제외
- [조건3] 주된 사무소 주소지가 경기도 31개 시,군(정관 명시)일 것

- 운영시간: 80시간 이상 운영

- 모집인원: 40명 이상 모집 운영(동일교 50% 초과불가)

- 예산지원: 5천만원 이하

- 공모 수: 10교 내외(시범지정 운영)

- 선정기준 및 심사관점: [붙임2]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참조

- 운영방법

-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운영
- 꿈의학교 학생지원 프로그램 1교 이상 운영
- 지역사회 협력 및 마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마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
- 지역사회 협력 및 마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예산 사용 가능
- 자생적 성장을 위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일부를 꿈의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부담) 권장

- 기타사항

- 사회적협동조합형에 선정된 경우, 운영자(실무자 및 정관에 포함된 임원진 포함)가 개별로 신청한 꿈의학교는 자동 선정 취소됨

3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

□ 정의 및 목적

- 정의: 경기도 내 기업(기관)과 단체 등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으로 학생의 꿈을 지원해 주는 학교 밖 교육활동
- 목적
 - [기관형] 기업 및 기관 등이 교육의 공공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경험 지원
 - [청소년단체형] 마을 중심의 청소년단체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방침

- 기관형은 해당 기관(시설)에서 공간과 인력 등을 지원(기부)하며, 기관별 동일유형으로 2교 이내 신청가능함(교당 지원금액 500만원)
- 기관형은 공모선정 후,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운영
- 기관형의 전년도 운영교는 업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기존 업무협약으로 갈음
- 청소년단체형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한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역대별로 신청 가능

□ 유형별 공모방법

○ 기관형

- 신청대상: 청소년수련관(원), 문화의집 등
- 운영시간: 50시간 이상 운영
- 모집인원: 학교별 20명 이상 모집(동일교 50% 초과불가)
- 예산지원: 500만원
- 선정기준 및 심사관점: [붙임2]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참조
- 운영방법: 장소 및 강사인력 등 기부 운영, 기관별 2교 이내 운영 가능

○ 청소년단체형

- 공모대상: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된 청소년단체

○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 한국청소년경기도연맹
○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 한국걸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 한국걸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경기본부
○ 한국UNESCO경기도협회	○ 사단법인 한국라보
○ 대한청소년충효단경기도연맹	

- 운영시간: 20시간 이상 운영
- 모집인원: 20명 이상 모집 운영
- 예산지원: 100만원
- 선정기준 및 심사관점: [붙임2]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붙임3]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참조
- 운영방법: 청소년단체별 지역대 중심으로 운영

4 공모 신청

□ 공모 계획 공고

- 시행 공고: 2021.1.6.(수)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대변인 언론 홍보 등

□ 공모설명회

- 일시 및 방법

일시	방법	비고
2021.1.6.(수) 10:00 ~ 1.10.(일) 18:00	- 공모설명회 녹화영상 [경기꿈의학교 유튜브] 채널에 탑재 - 질의사항 입력 (http://naver.me/For62PW1)	답재기간 이후 영상 삭제 (지자체 공동운영 공모내용 포함)
1.7.(목) ~	- 질의응답 탑재	경기마을교육공동 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설명회 참여 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시청을 통한 자율 참여
- 질의응답 게시판 작성을 통한 궁금증 문의

※ 공모설명회 준비 혼잡 관계로 전화민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선정기준, 사업 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만꿈」: 2020.12.21.(월)~2021.1.22.(금) 17:00 마감 (마감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찾꿈」, 「다꿈」: 2021.1.8.(금)~2020.1.21.(목) 17:00 마감 (마감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신청방법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에 온라인 신청
 - ※ 마감 당일 서버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2~3일 전 탑재 권장
 - ※ 당일 홈페이지 서버 다운으로 인한 사유도 접수 허용 안 됨

○ 응모 자격 및 제출 서류

구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응모 자격	· 경기도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개인 · 비영리 단체나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출연기관 등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한 청소년단체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제출서류	① 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양식1)	①-1 꿈의학교 신청서(양식2) ①-2 사회적협동조합 꿈의학교 신청서(양식3) ② 꿈의학교 운영계획서(양식4) ③ 사업비 집행계획서(양식5) ④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기관(시설) 및 청소년단체 소개서(양식6)	공동제출

해 당 자 만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7)	
	-	⑥-1 비영리단체(법인) -고유번호증 1부 ⑥-2 사회적협동조합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 유번호증) 1부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정관 사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선택] -교육관련 실적 및 증 빙자료 -기타실적 및 증빙자료 ※개인 신청자는 고유번호 증 제출하지 않음	⑥ 기관형: -고유번호증(또는 기관등록증) 1부 ※청소년단체는 별도 공문 으로 같음

※ 해당자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양식 활용

VI 예산 운용 및 질 관리

□ 예산 운용 방침

- 공정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통한 적정 예산 지원
- 운영주체 역량 강화 지원 및 타당한 예산 집행방법 안내
- 교육과정, 강사인력, 운영시간,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적합성 및 공정성에 기반한 선정 및 예산지원

□ 질 관리 방침

- 꿈의학교별 지방보조금평가를 실시, 그 결과 공개, 차년도 선정 시 평가 결과 반영
- 꿈의학교별 과정평가(컨설팅)를 도입, 차년도 꿈의학교 선정 시 학생 만족도, 과정평가 컨설팅 결과 및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반영 및 평가

□ 홍보 계획

- 경기도 내 초, 중, 고 전 학급 대상 홍보
 -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SNS, 경기학부모소통앱, 모바일 앱 아이 엠스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 학생자치회, 학부모네트워크, 대변인실을 통한 다각적 홍보 협조
- 홈페이지 팝업 존 등을 이용한 홍보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31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

VII 행정사항

□ 교육지원청 [온라인]담당자 협의회

- 목적: 2021년도 꿈의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일시: 2021.1.5.(화) 10:00~17:00
- 장소: 줌(ZOOM) 활용 온라인 협의회
- 내용: 경기꿈의학교 이해 및 정책 방향 공유

□ 교육지원청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 목적: 2021년도 꿈의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일시: 2021.3.29.(월)~3.31.(수) 10:00~17:00
- 장소: 추후 알림
- 내용: 지역별 모임을 위한 사전 안내, 개교 지원 내용 등

□ 경기꿈의학교 지역별 모임

- 기간: 2021.4.1.(목)~4.15.(목)(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대상: 운영자 및 꿈지기
- 유의사항: 지역별 모임 불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주최·주관: 교육지원청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워크숍(쇼미더스쿨)**

- 일시: 2021. 5월~6월 중(예정)
- 대상: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꿈짱 및 꿈지기
- 유의사항: 쇼미더스쿨 불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주최·주관: 교육지원청

VIII 기대 효과

- 경기꿈의학교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꿈 실현의 기회 제공
- 경기꿈의학교의 건전한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중심 교육 실현

2021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꿈의학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경기도교육감

1. 공모유형 및 신청대상

유형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모집교 수	000교	000교	000교
대상	·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개인 · 비영리 단체나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출연기관 등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청소년단체
			· 성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2. 유형별 예산 지원

구 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예산 지원	★5백만원 이하	★도전형: 1천만원 이하 ★성장형: 2천5백만원 이하 ★사회적협동조합형: 5천만원 이하	★기관형: 5백만원 ★청소년단체형: 1백만원

3. 운영기간: 2021년 5월 ~ 2021년 12월

4. 경기꿈의학교 공모설명회

- 일시 및 방법

일시	방법	비고
2021.1.6.(수) 10:00 ~ 1.10.(일) 18:00	- 공모설명회 녹화영상 [경기꿈의학교 유튜브] 채널에 탑재 - 질의사항 입력 (http://naver.me/For62PW1)	탑재기간 이후 영상 삭제 (지자체 공동운영 공모내용 포함)
1.7.(목) ~	- 질의응답 탑재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설명회 참여 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시청을 통한 자율 참여
- 질의응답 게시판 작성을 통한 궁금증 문의

※ 공모설명회 준비 혼잡 관계로 전화민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신청서류

구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제출서류	공동 제출	① 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양식1)	①-1 꿈의학교 신청서(양식2-1) ①-2 사회적협동조합형 신청서(양식2-2) ② 꿈의학교 운영계획서(양식3) ③ 사업비 집행계획서(양식4) ④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기관(시설) 및 청소년단체 소개서(양식5)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6)
			⑥-1 비영리단체(법인) -고유번호증 1부 ⑥-2 사회적협동조합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 유번호증) 1부
	해당 자 만	-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정관 사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선택] -교육관련 실적 및 증빙자료 -기타실적 및 증빙자료 ※개인 신청자는 고유번호증 제출하지 않음	※청소년단체는 별도 공문으로 같음함
--	--	---	---------------------

※ 해당자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양식 활용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만꿈」: 2020.12.21.(월)~2021.1.22.(금). 17:00 마감(마감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찾꿈」, 「다꿈」: 2021.1.8.(금)~2021.1.21.(목). 17:00 마감(마감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접수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 마감 당일 서버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2~3일 전 탑재 권장

※ 당일 홈페이지 서버 다운으로 인한 사유도 접수 허용 안 됨

7. 심사·선정 기준 및 심사관점

- 「설명회 자료집」의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할 것

8. 결과 통보

- 시기: 2021년 3월 하순
-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약정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4월 중순 이후)
-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필수 사용
- 꿈의학교별 지방보조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차년도 선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
-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평가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제출 자료는 1월 26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주소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 최종 선정된 꿈의학교는 지역별 모임(쇼미더스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구분	꿈의학교 지역별 모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워크숍 (쇼미더스쿨)
일시	2021.4.1.(목)~4.15.(목) 중 예정	2021. 5월~6월 중 예정
대상	운영자 및 꿈지기 1명	꿈짱 및 꿈지기

- 공모 제출 서류 허위사실 기재 및 예산 과다 책정,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심사과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꿈의학교 컨설팅(사업비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꿈의학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공지: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공지사항

교육지원청							
지역	문의처	지역	문의처	지역	문의처		
가평	031-580-5182	동두천양주	031-860-4386	연천	031-839-0213		
고양	031-900-2938	부천	032-620-0286	용인	031-8020-9261		
광명	02-2610-1403	성남	031-780-2528	의정부	031-820-0068		
광주	031-280-7231	수원	031-250-1383	이천	031-639-5639		
하남	031-796-6497	시흥	031-488-4593	파주	031-940-7223		
구리남양주	031-550-6162	안산	031-412-4562	평택	031-650-1552		
군포	031-390-1126	안성	031-678-5236	포천	031-539-0163		
의왕	031-390-1128	안양과천	031-380-7277	화성	031-371-0673		
김포(만꿈)	031-986-2756	양평	031-770-5282	오산	031-371-0667		
김포(찾꿈)	031-980-1241	여주	031-880-2351				
경기도교육청							
만꿈	031-820-0903	찾꿈	031-820-0904	다꿈	031-820-0902	홈페이지 및 예산 관련	031-820-0905

끝.



심사 및 선정기준

1 심사 및 선정 기준

□ 공통 심사 기준

- 마을과 연계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의 환류 가능성
-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가치 추구
- 꿈의학교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열정, 활동을 통한 공공성,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가치 추구 및 실천가능성 등 고려
- 학생꿈조사⁵⁾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당 꿈조사 분야별 1교 이상 선정하되 예산액의 120% 내에서 추천단, 지자체 공동운영 지자체인 시흥시와 오산시의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예산 지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되 부적정(허위 및 부풀리기)예산 시 우선 탈락하며, 적정한 꿈의학교의 경우 신청예산을 조정 없이 예산 지원함. 단, 1,2차 심사 결과 하위 20% 내외에서 예산 조정 가능
- 2020년도 운영 꿈의학교는 예산 미정산시 최종 심사에서 탈락
- 지역별 심사 선정 후 도교육청 종합검토 및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
- 전체 공모예산액에서 찾꿈 비율은 70% 이하로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하며 만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5) 학생꿈조사 상위 11개 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환경), 뮤지컬·연극, 진로 등

□ 유형별 심사 기준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만꿈은 학생 스스로 기획 및 운영 가능성, 꿈의학교 운영의 의지와 열정 등을 중심으로 심사
- 만꿈은 학생의 도전정신과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1차 서류심사에서 예산액의 150% 선정, 2차 면접심사에서 예산액의 120% 선정, 3차 현장심사 생략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찾꿈」은 운영 대상에 따라 도전형,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으로 별도 심사하며, 꿈의학교의 교육과정 및 강사인력, 운영시간,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예산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기반하여 선정
- 도전형(신규)은 꿈의학교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형은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 및 지속발전가능성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목적과 취지 중심으로 평가함
- 「찾꿈」에 신청하는 개인, 비영리단체(법인)는 1교 신청만 가능하며 다른 유형⁶⁾의 꿈의학교에 중복 신청 불가함. 단,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는 도교육청 별도공모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개인별로 성장형(도전형) 꿈의학교와 중복하여 각각 신청 가능함
- 성장형(도전형) 꿈의학교와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에 모두 지원한 경우, 각각의 선정·심사에 모두 참여하여야 함. 도교육청 심사일과 지역청 심사일이 동일할 경우 실무자 대리 참여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형은 꿈의학교 운영 가능성 및 자생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심사, 3차 현장평가 후 1차, 2차, 3차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함

6) 꿈의학교 유형: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 사회적협동조합형의 2차 면접(발표) 심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및 운영할 꿈의학교에 대한 소개를 7분 내외로 발표(PPT자료 준비) 후 심층 면접을 실시함
- 사회적협동조합형에 선정된 경우 성장형(도전형) 꿈의학교는 자동 선정이 취소됨
- 「찾꿈」을 신청하는 개인 중 교원⁷⁾ 및 학원, 방과후 업체 등 꿈의학교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운영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다함께 꿈의학교

- 「다꿈」은 1차 서류심사만 실시함
- 기관형은 해당 기관(시설)에서 공간과 인력 등을 지원하며, 기관별로 동일유형 내 2교 이내 신청 가능함. 단, 공모 선정 후,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전년도 운영교는 업무협약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업무협약으로 같음함
- 청소년단체형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한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마을 중심 지역대별로 신청 가능함. 단, 선정된 후 별도 협약을 하지 않고 기존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서로 같음함

2 선정 기준 및 방법

□ 단계별 선정기준

구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도전형,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심사 · 예산액의 150%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심사 · 예산액의 150% 선정 ※ 도전형과 성장형은 별도 모집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및 서류심사 · 모집교의 200% 선정(20교 내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심사 · 예산액의 150% 선정

7)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운영자, 실무자로 참여 제한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심사 • 예산액의 <u>120%</u>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심사 • 예산액의 <u>150%</u> 이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발표) 심사 • 모집교의 <u>120%</u> 선정(12교 내외 선정) 	-
3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적/부) • 예산액의 <u>120%</u>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평가 • 모집교 <u>100% 선정</u> (10교 내외 선정) 	-

□ 단계별 심사 관점

○ 1단계(서류심사)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1단계 서류심사)

심사 영역	심사 관점
학생주도성 (50)	• 학생 스스로 기획 및 운영 가능성
	•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 (목적의 명확성, 의지, 열정)
	•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40)	• 구체적인 내용 구성 및 방법의 적합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준비와 활용
	• 장소와 기간 등 운영 적합성
	• 적정한 모집 대상과 학생 수
	• 경쟁이 아닌 공동성장의 추구
예산 적정성 (10)	•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1단계 서류심사)

심사 영역		심사 관점
학생주도 교육활동 (30)		•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 마을 자원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실현가능성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40)		• 관련 기관(지자체) 및 외부 자원과의 연계성
		• 목적과 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수업시간별 활동내용과 집행계획과의 연계성
		• 운영 장소 및 인력 운영계획 적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지속발전 가능성 (30)	공통 사항	• 운영자와 마을의 상호 지속발전 가능성
		• 프로그램의 지역 청소년 성장 기여도
		•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연계성 및 꿈의학교 지속발전 가능성
	성장형	• 꿈의학교 참여도(학습공동체, 성장발표회 등)
• 2020년 꿈의학교 운영 실적 평가(컨설팅 등)		
2020년 운영내용 (적/부)	성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민원교 및 운영포기교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포기사유 제외) • 2020년 신규운영자인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원격연수 이수 여부

- 다함께 꿈의학교(1단계 서류심사)

심사 영역	심사 관점
<p>학생주도 교육활동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p>실현 가능성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과 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별 활동내용과 집행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장소 및 인력 운영계획 적정성
<p>지속발전 가능성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와 마을과의 지속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의학교와 주요활동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연계성 및 꿈의학교 지속발전 가능성
<p>신청예산의 적정성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단계(면접심사)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2단계 면접심사)

심사 영역	심사 관점
<p>학생주도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동기 및 응모준비 과정에서의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p>가치추구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가 생각하는 꿈의학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의학교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마을과의 연계 방안
<p>실현가능성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기간과 장소 섭외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모집 및 홍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2단계 면접심사]

심사 영역		심사 관점
철학적 가치와 방향성 (20)		• 꿈의학교 지원 동기
		• 꿈의학교(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가치
		• 학생이 참여하는 꿈의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역할
		• 운영하고자 하는 꿈의학교에 대한 전문성
운영 적절성 (30)	공통 사항	• 꿈의학교 운영 목적
		•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법
	• 꿈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성장형	• 기존(전년도)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30)		• 꿈의학교 운영 장소 확보
		• 꿈의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담인력 운영 계획
		• 수업시간별 주요 활동 내용 운영 방법
		• 꿈의학교 운영, 학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계획
지속 발전 가능성 (20)	공통 사항	• 운영자와 마을과의 연계성 및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 꿈의학교와 연계된 활동내용(지역청소년활동 기여)
	• 마을과의 결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내용 (학습공동체, 성장나눔, 자원봉사 등)	
성장형	• 찾꿈에서 만꿈으로의 성장 사례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 Q&A

공모 관련

1 유치원생도 참여 가능한가?

- 유치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경기꿈의학교는 초, 중, 고 학생 및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함

2 비영리단체와 개인에 대한 교육적 공익성 판단은?

- 심사·선정 시 최우선 고려 항목은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여부” 임. 따라서 교육적 공익성 판단은 심사과정에서 파악함

3 ‘단위학교’ 는 경기꿈의학교에 참여할 수 없나?

-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밖” 교육활동 원칙임. 따라서 학교는 꿈의학교에 참여할 수 없음

4 ‘사회적협동조합형’ 에 선정된 꿈의학교의 조합원 및 회원은 개인별로 별도의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없나?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회원은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 선정과는 별개로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단, 이사회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은 선정 시 개별로 신청한 꿈의학교는 자동 취소됨

5 다함께꿈의학교 기관형의 참여대상 및 운영기간은?

- 기관형은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출연, 하부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음(단, 직속기관은 참여 불가함)
 - 2021년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시설(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은 위탁기관 포함, 모두 다함께꿈의학교로 참여하여야 함
 - 2021년부터 기관형은 동일기관에서 다함께꿈의학교 2교까지 신청 가능함(1교당 500만원씩 지원 가능)
- 기관형의 운영 기간은 지자체의 정산 종료시기로 인하여 2021.11.30.까지로 함

학생 수 및 모집 관련

6 경기꿈의학교 운영 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 경기꿈의학교 운영 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 가능
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서는 추가 모집된 학생의 경우도 최소 교육활동 시수 이상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7 개별 꿈의학교의 학생 선발의 기준은?

- 2021년부터는 기존 운영되던 선착순 모집 기능 대신 자동추첨 방식이 도입됨. 따라서 선정된 꿈의학교에서는 자동추첨 방식과 기한 내 모집방식 중에 선택하여 학생 선발을 실시하며, 개별 꿈의학교의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함
- 경기꿈의학교 취지에 맞게 학생 선발을 하며 학생 모집 시 반드시 개별 홈페이지에 선발 기준을 명시해야 함

8 학생 모집 시 목표 인원의 기준은?

- 각 꿈의학교별 계획서상 최종 목표 인원의 80%이상 인정, 그 이하이면 수정된 운영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서 포함) 제출
 - 꿈의학교 운영 시, 동일교 1/2 이상 학생 참여 불가

구 분		모집(최소) 인원수	비 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0명 이상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도전형(신규)	20명 이상	
	성장형	20명 이상	
	사회적협동조합형	40명 이상	(운영프로그램 1교당 인원이 아닌 전체 인원 기준임)
다함께 꿈의학교	기관형	20명 이상	
	청소년단체형	20명 이상	

9 경기꿈의학교는 운영 지역(기초지자체)에서만 학생 모집을 해야 하는가?

- 운영 지역의 학생이 우선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지역 학생들도 참여 가능함
(경기도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경기도 거주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10 경기꿈의학교 유지를 위한 최소 학생 수는?

- 경기꿈의학교 최초 모집인원의 50%가 될 때까지 운영 가능

11 전년도 꿈의학교 참여 학생의 재참여 가능 여부?

- 가능함(단, 모든 학생은 1개의 꿈의학교에만 참여할 수 있음)

교육과정 운영 관련

12 겨울방학 운영 가능 여부?

- 운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겨울방학 운영은 권장하지 않음. 12월 이전에 성장나눔발표회가 열리고 내년도 1월에는 새로운 꿈의 학교를 공모함.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자료는 11월 마감이므로 여름방학 동안 활발히 활동할 것을 적극 권장함
- 단, 코로나19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 교육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3 개별 「꿈의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있어야 하는가?

- 「찾꿈」은 「꿈의학교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함. 「만꿈」, 「다꿈」은 「꿈의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운영자, 퇴직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구성(단, 학생, 학부모, 운영자는 필수 포함)
- 운영자가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가 개별 「꿈의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수행 가능
- 역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각 꿈의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그 밖에 꿈의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 운영: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꿈의학교 운영 전반을 자문,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이상 필수 운영해야 하며 회의록은 정산처리 시 제출해야 함

14 | 개교식과 오리엔테이션, 수료식도 수업 시간에 포함되나?

- 포함됨

15 | 꿈의학교 활동 사유로 학교에 공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꿈의학교 참여 사유로 인한 공결 등 결석, 조퇴는 인정하지 않음

16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출석인정 가능 기준은?

- 코로나19로 인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및 코로나19 감염 학생의 경우, 등교 전 증상 발현 시 등교 중지 및 꿈의학교 운영자(꿈지기)에게 연락 필수, 결석처리 원칙이나 진료확인서나 학부모확인서를 제출 시 출석 인정
- 등교 후 증상 발현 시 수업참여 금지 및 대국민 코로나19 대응매뉴얼에 따라 처리, 출석 인정

17 | 분반 수업은 가능한가?

- 코로나19의 지속 가능성으로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분반 수업 운영 가능함(5명~10명 기준)

18 |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 코로나19의 지속 가능성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은 금지함.
단,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교육과정 변경 가능함

19 안전교육 운영은?

- 2021년부터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 안전교육 2시간 이상을 필수로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함
- 경기꿈의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의 안전이므로, 모든 꿈의학교는 개교식 날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며(코로나19 관련 교육 필수), 매 수업시간 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교식 날에 경기꿈의학교 「학생 안전 서약서」 징구 필수 실시
- 안전보험 가입 의무 실시, 꿈의학교 참여 학생은 반드시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필요시 운영자, 실무자, 보조강사도 가능)

20 온라인 수업 운영 여부는?

- 코로나19의 지속 가능성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 가능하나, 총 운영시간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의 지속 가능성 대비, 상반기(5월~7월) 운영 시에는 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편성을 권장함
- 출석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출석인정 가능

기타 관련

21 꿈의학교명은?

- 경기꿈의학교명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으나, 꿈의학교 활동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되, 외래어보다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꿈의학교명을 작성하기 바람

22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기록 가능한가?

- 학생의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영역 특기 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음
- 출석부 관련 서류 구비 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제출(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 「찾꿈」, 「만꿈」, 「다꿈」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원칙임. 운영자 임의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거부 불가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자세한 기준과 내용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2021년 4월 이후 예정)

2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대상 여부는?

- 경기꿈의학교 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회신이 있는 바, 꿈의학교별 자체 안전보험 가입 및 안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함
[관련: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부-19417(2015.5.22.)호]

24 이행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에만 해당되며,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를 구비한 후 인근 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함(자부담 처리)

25 새로운 직인이 필요한가?

- 새로운 직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대표자) 도장 또는 사인이 있으면 가능

26 민원교 등의 심사·선정은?

- 꿈의학교 민원 발생교의 운영자(실무자) 참여를 배제함. 심사 시 탈락 사유임

27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성장형에는 몇 년 동안 함께 꿈의학교를 운영한 실무자는 참여할 수 없나요?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성장형은 1년 이상 운영한 운영자 즉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실무자는 해당되지 않음.

꿈의학교 지자체(시흥, 오산) 공동운영 관련

28 꿈의학교 지자체 공동운영은 무엇인가요?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꿈의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마을교육자원을 꿈의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꿈의학교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2021년 2개 지역(시흥, 오산)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함

29 꿈의학교 지자체 공동운영은 선정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꿈의학교 지자체 공동운영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꿈의학교 공모계획」의 내용 준용, 「꿈의학교 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에 의거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고문을 통해 공모의 방향 및 선정기준 안내

<양식 1> 2021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꿈짱 대표 1명)

지역	의정부	이름	(성별:)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주소	
학교명	○○(초/중/고등)학교	학번	학년 반 번
생년월일	학교 밖 청소년만 해당		
자택주소			

2. 내가 만들고 싶은 꿈의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꿈의학교명			
대표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주요 분야 택1		
소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소분야 택 0~2		
모집대상	초(), 중(), 고() ※ 해당 란 'O' 표시	모집인원	()명 ※ 최소 10명 이상
운영시간	방과 후(), 주말(), 방학() ※ 해당 란 'O' 표시	총 운영시간	()시간 ※ 최소 30시간 이상

<꿈의학교 소개글 100자 이내>
-작성내용개요-
 1. 왜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싶은가?
 2. 무엇에 도전하는 꿈의학교 인가?

<꿈의학교 운영계획>
-작성내용개요-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꿈의학교를 운영할 계획인가?
 2. 꿈의학교를 참여한 후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가?
 (A4 반장 정도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

3. 꿈지기 선생님

※꿈지기선생님을 못 구한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신청 전 문의할 것
 ※꿈지기선생님이란? 꿈의학교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학생주도의 활동은 지원하는 조력자

이름	휴대전화	010-0000-0000
직업	학부모()	교사()
	대학생()	그 외()

※ 해당 란 'O' 표시

4. 예산 계획 (예시)

※예산지원의 범위는 300~500만원이며 예산신청의 적절성을 심사함
 ※총 예산요구액이 100만원 단위 일 것

항목	기준단가(원)	수량(개, 명)	시간, 횟수	예산요구액(원)
강사비	80,000	1	10	1,300,000
식비	8,000	10	10	1,000,000
물품구입비	5,000	20	10	1,200,000
홍보비	100,000	1	2	200,000
회계검토수수료(필수)	100,000	1	1	100,000
안전보험료(필수)	10,000	10	1	100,000
총 요구액				4,000,000

<양식 1>

2021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꿈짱 대표 1명)				
지역	의정부	이름	(성별:)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주소		
학교명	○○(초/중/고등)학교	학번	학년	반 번
생년월일	학교 밖 청소년만 해당			
자택주소				
2. 내가 만들고 싶은 꿈의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꿈의학교명				
대표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주요 분야 택1			
소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소분야 택 0~2			
모집대상	초(), 중(), 고() ※ 해당 란 '○' 표시	모집인원	()명 ※ 최소 10명 이상	
운영시간	방과 후(), 주말(), 방학() ※ 해당 란 '○' 표시	총 운영시간	()시간 ※ 최소 30시간 이상	
<꿈의학교 소개글 100자 이내> -작성내용개요-				
1. 왜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싶은가?				
2. 무엇에 도전하는 꿈의학교 인가?				
<꿈의학교 운영계획> -작성내용개요-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꿈의학교를 운영할 계획인가?				
2. 꿈의학교를 참여한 후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가? (A4 반장 정도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				
3. 꿈지기 선생님				
※꿈지기선생님을 못 구한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신청 전 문의할 것				
※꿈지기선생님이란? 꿈의학교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학생주도의 활동은 지원하는 조력자				
이름		휴대전화	010-0000-0000	
직업	학부모()	교사()	대학생()	그 외() ※ 해당 란 '○' 표시
4. 예산 계획 (예시)				
※예산지원의 범위는 300~500만원이며 예산신청의 적절성을 심사함				
※총 예산요구액이 100만원 단위 일 것				
항목	기준단가(원)	수량(개, 명)	시간, 횟수	예산요구액(원)
강사비	80,000	1	10	1,300,000
식비	8,000	10	10	1,000,000
물품구입비	5,000	20	10	1,200,000
홍보비	100,000	1	2	200,000
회계검토수수료(필수)	100,000	1	1	100,000
안전보험료(필수)	10,000	10	1	100,000
총 요구액				4,000,000

<양식 2-1>

2021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다함께 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1쪽으로 작성)

유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도전형(신규)	성장형	기관형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명	지역(시/군)		꿈의학교명	
대표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주요 분야 택1			
소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소분야 택 0~2			
단체(개인)명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본인 이름		대표자	이름 대표 (실무자 중복 불가)
			실무자(2명)	연락처(핸드폰)
신청주체	개인 (학부모, 주민)	비영리단체 (법인)	기관(시설)	청소년단체
단체 소재지	※기관(시설), 비영리단체(법인)만 작성 다함께 꿈의학교 청소년단체형도 기재		고유번호 또는 기관등록번호	※기관(시설), 비영리단체(법인)만 작성
꿈의학교 운영 여부	신규	2021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2015운영 <input type="checkbox"/> 2016운영 <input type="checkbox"/> 2017운영 <input type="checkbox"/> 2018운영 <input type="checkbox"/> 2019운영 <input type="checkbox"/> 2020운영 <input type="checkbox"/>		
운영 기간	2021.00.00. ~ 2021.00.00. [다꿈 기관형: 2021.00.00 ~ 2021.11.30.]		주 운영장소	
참가학생 수	20명 이상		총 운영시간	50시간 이상
주요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사업비 신청액	(예시) 25,000,000원 (단위: 원)			
<p>「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꿈의학교 대표 ○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경기도교육감 귀하</p>				
<p>※ 붙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계획서 1부. • [필수] 2021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 [필수] 2021 경기꿈의학교 개인, 단체(법인), 기관(시설) 및 청소년단체 소개서 1부. • [필수] 고유번호증(기관등록증) 1부. [단체(법인), 기관(시설)일 경우] •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필수] 소개서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활동실적 등]: 우편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집목적	경기꿈의학교 선정 심사 및 운영·관리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양식 2-2>

2021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 [1쪽으로 작성]

유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사회적협동조합형)		
사회적협동조합명			
단체 소재지	지역(시군), 주소지 입력	기관등록번호	
꿈의학교명		대표자	이름 <small>대표</small> <small>(실무자 중복 불가)</small>
		실무자(3명)	연락처(핸드폰)
운영 기간	2021.00.00. ~ 2021.00.00.	주 운영 장소	
대표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주요 분야 택1		
소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중 소분야 택 0~2		
참가학생 수	40명 이상	총 운영 시간	80시간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한 꿈의학교 운영 여부	2015운영 <input type="checkbox"/> 2016운영 <input type="checkbox"/> 2017운영 <input type="checkbox"/> 2018운영 <input type="checkbox"/> 2019운영 <input type="checkbox"/> 2020운영 <input type="checkbox"/>		
꿈의학교 활동 소개 및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사업비 신청액	(예시) 50,000,000원 (단위: 원)	자비부담액	(예시) 3,000,000원
<p>「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꿈의학교 대표 ○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경기도교육감 귀하</p>			
성장형(도전형) 꿈의학교명 (임원이 개별 신청한 학교명 기재)	지역	개인/단체	대표자 이름
			꿈의학교 이름
<p>※ 불입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계획서 1부. • [필수] 2021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 [필수] 2021 경기꿈의학교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1부: 우편 제출 • [필수]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우편 제출 • [필수] 정관 사본 1부: 우편 제출 • [필수] 등기사항정부증명서 1부: 우편 제출 • [선택] 교육관련 실적 및 증빙자료: 우편 제출 • [선택] 기타 실적 및 증빙자료: 우편 제출 • [필수] 소개서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활동실적 등): 우편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집목적	경기꿈의학교 선정 심사 및 운영·관리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양식 3>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계획서 [5쪽 이내로 작성]

목 적

-
-

중점 운영 방향

-
-

주요 활동 내용 및 학생 중심 교육 방법

-
-
-
-
-
-

꿈의학교와 마을 연계 협력 방안

-
-

홍보 및 학생모집 전략 (예시)

- 현수막, 홍보안내문, 길거리 홍보 등

○ 지역 청소년 복지센터 방문 안내 홍보

-
-
-

□ 코로나19 대응 안전교육 방안(예시)

- 꿈의학교 내 방역물품 비치(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가림막 설치 등)
- 학생 예방 교육 실시(학생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
-

□ 운영시간별 주요 활동 내용(예시)

순	일시	주요 활동 내용	운영시간		장소	구분	
			시간	누계		대면	비대면
예시	2021.5.25.(토)	• 개교식 및 마음열기	2	2/55	00000		0
	2021.6.○	• ○○○의 직업소개와 프로그램	3	8/55	00000		0
	2021.7.○	• ○○ 프로그램	3	11/55	00000		0
	2021.8○	• 안전교육 프로그램(필수 운영 2시간)	2	5/55	00000	0	
	2021.8.○	• ○○ 알아보기 프로그램	3	14/55	00000	0	
	2021.9.○	• ○○ 프로그램	3	17/55	00000	0	
		• ...					
		• ...					
	2021.10.○	• ○○성장 발표자료 만들기	3	50/55	00000		
	2021.10.○	• ○○꽃다발과 ○○만들기	3	53/55	00000		
	2021.10.○	• ○○발표회와 졸업식	2	55/55	00000		

※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점

- 상반기(5월~7월) 운영 시에는 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편성을 권장함
- 단, 온라인 수업은 전체 수업의 30% 이내 가능
(코로나19 지속 시 추후 후속조치 알림 예정)
- 분반(5명~10명) 운영 가능
(교당 총 운영 시수는 학생 1인당 수강시수가 기준임)
- 안전교육 2시간 이상 필수 포함(만족은 자율적 편성 가능)
- 1일 수업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함

<양식 4>

2021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계획서 [1쪽으로 작성]

총괄표

(단위: 원)

꿈의학교명	지역(시/군)	총 금액	비고

소요 사업비 및 지원신청액 [예시]

비목별 산출내역 ※ 총 예산요구액이 100만원 단위 일 것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사업비	산출내역
000활동	사업진행비	600,000	000등 재료비 15,000원×10개×4회
	운영수당	480,000	외부강사 80,000원×2회×3명
	운영수당	1,200,000	내부강사 40,000원×3시간×10회×1명
	사업진행비	1,200,000	교육장 대관료 100,000원×12회
소계		3,480,000	
...			
소계		0	
총 합계		15,000,000	

※ 유의사항

-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 작성
- 총 예산 요구액이 100만원 단위 일 것, 추가 작성 시 절사함
- 강사수당: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작성, 다함께 꿈의학교는 내부강사비, 보조강사비, 행정업무수당 편성 불가
- 단체사업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신규 꿈의학교 운영자는 사업기간 중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연수에 참여하고, 사업 정산서 제출 시 연수 이수증(10시간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양식 5-1> 2021 경기꿈의학교

개인 소개서 [1~2쪽으로 작성]

운영자	주 소	시(군) 구 00 로 00-1
	연락처	○ 전화 : 010-1234-4567 ○ E-Mail :
실무자1	주 소	시(군) 구 00 로 00-1
	연락처	○ 전화 : 010-1234-4567 ○ E-Mail :
실무자2	주 소	시(군) 구 00 로 00-1
	연락처	○ 전화 : 010-1234-4567 ○ E-Mail :
운영장소		
꿈의학교 지원동기		
인력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및 내부강사 소개 ○ 꿈의학교 운영 시 역할 등 	
※ 운영자 주요 활동 내역	○ 신청한 꿈의학교와의 연관성 중심으로 작성	
2021 신규만 작성	○ 꿈의학교에 대한 운영자의 철학 중심으로 기술	
2020 운영자만 작성	○ 2020 운영 프로그램과 2021년 신청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중심으로 기재	
※ 증빙서류[필수] : 개인 주요활동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 활동실적 등 증빙서류는 우편제출		

<양식 5-2> 2021 경기꿈의학교

단체(법인) · 기관(시설) · 청소년단체 소개서 (1~2쪽으로 작성)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시(군) 구 00로 00-1	
	연락처	○ 전화 : 031-123-4567 ○ 홈페이지 : http:// ○ FAX : 031-234-5678 ○ E-Mail :	
설립목적	○		
기관(단체) 연혁	○ 2001.11. 8 ○ ○ ○ 창립 ○ 2002. 6.15 ○ ○ ○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 원 수		
꿈의학교 지원동기	○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 ○		
인력 운영 계획	○ 실무자 및 내부강사 소개 ○ 운영 시 역할 등		
※ 2020 주요사업	○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 ○		
2021 신규만 작성	○ 꿈의학교에 대한 운영자의 철학 중심으로 기술		
2020 운영자만 작성	○ 2020 운영 프로그램과 2021년 신청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중심으로 기재		
※ 증빙서류[필수] : 단체(법인)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우편 제출			

<양식 5-3> 2021 경기꿈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소개서 [1~2쪽으로 작성]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시(군) 구 00로 00-1	
	연락처	○ 전화 : 031-123-4567 ○ 홈페이지 : http:// ○ FAX : 031-234-5678 ○ E-Mail :	
설립목적	○		
사회적 협동조합 연혁	○ 2019. 11. 8 ○○○ 창립 ○ 2020. 6.15 ○○○○ 설립인가		
인가 및 인력현황	인가기관	<u>교육부</u>	설립인가일
	대표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임원 수
	회원수		출자금 납입총액(원)
꿈의학교 지원동기	○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 ○		
인력 운영 계획	○ 실무자 및 내부강사 소개 ○ 운영시 역할 등		
※ 2020 주요사업	○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 ○		
	○ 2020 운영 프로그램과 2021년 신청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중심으로 기재		
※ 증빙서류[필수] : 단체(법인)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우편 제출			

<양식 6> 2021 경기꿈의학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생년월일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자(운영예정자)로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